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자체 종합감사 -
감사 결과 처분 내용

2021. 9.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I. 감사 개요

- 감사대상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 감사기간 : 2021. 7. 5. ~ 7. 9.(5일간)
- 감사범위 : 2018. 5. 1. ~ 2021. 6. 30.
- 감사인원 : 감사팀장 외 3인

II. 감사 성과

○ 행정상

(단위 : 건)

계	처 분 지 시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요구	현지처분	
5	1	3	-	1	

○ 재정상

(단위 : 원/건)

계	변 상	추 징	회 수 등	기 타
91,780 / 2	-	91,780 / 2	-	-

Ⅲ.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

연번	제 목	지적사항 심의 내용				
		행정상		재정상(원)		
		시정	주의	변상	추징	회수 등
	5건				2 (91,780)	
1	계약심사 등 계약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2	공사계약 이행 절차에 관한 사항		○			
3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출업무 소홀		○			
4	기간제근로자 관리 업무 소홀	○			○ (11,780)	
5	[현지처분](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 (80,000)	

① 계약심사 등 계약 사전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 「당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2조 ~ 제4조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수행하는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전기, 통신, 소방, 설비 공사는 5천만 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를 당진시 계약심사 부서(감사법무담당관)에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사·용역·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또는 비목 포함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럼에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추정금액 5천만 원 이상인 「2019년도 ●●●●●●●● ●● ● ●●●●●용역」에 대하여 당진시 계약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발주 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요 구 】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③ 업무추진비 집행계획 미수립 및 지출업무 소홀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당진항 서부두 입주업체 지원 및 활성화 업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3조의2(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2호 [별표5]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기 위하여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하고,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며 ‘만일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대한 자체감사 기간(2021. 7. 5. ~ 9.)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9~2021년까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 또한, ‘2019년 충청남도 도민체전 선수단 격려금’ 을 집행하고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않았고, 만일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했으나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지 않고 지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관련법령을 연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업무 교육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간제근로자 관리 소홀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당진항지원센터 운영과 서부두 공공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공제)

-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의거 보험료 징수액을 산정하여 공제하고 있다.
(2020년기준 국민건강보험 3.335%, 장기요양보험 10.25%)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2019. 1.~2월 당진항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면서 ♠♠♠의 1인에게 23,560원을 공제하여야 했으나 11,780원을 공제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일용직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2019. 6. 1.(토) 13명, 2019. 10. 27.(일) 15명에 대하여 제초작업 인부 사역결의를 하면서 사역단가 산출시 “시급 10,140원 * 휴일근무 1.5배” 로 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따라 유급휴일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
- 또한,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단,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
- 그러나,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표]와 같이 단 하루만 근로하는 제초작업 인부에게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미공제된 11,780원을 즉시 추징하고,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5 [현지처분](도급)계약 체결 시 인지세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및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에 따르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는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의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에서는 감사 기간 내(2018. 7. 1. ~ 2021. 6. 30.) 당진항지원센터 ○○○○ 외 3건의 도급 계약 건에 대하여 건별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임에 따른 건별 2만원의 인지세액 납부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현지처분 결과 】

미납부된 인지세액 8만원 추징 완료